

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(제4조 관련)

●필수 / ○선택

연번	장 비 명	수량	대별 보유 적응성						
			일 반 구조대	특수구조대			직 할 및 테러대응 구 조 대	항공구조 구 급 대	생활안전대
				화학	수난	산악			
계	14종	15	11	11	9	9	11	8	7
1	카라비너	2	●	●	●	●	●	●	●
2	개인로프	1	●	●	●	●	●	●	●
3	안전벨트 (전신형 또는 하반신형)	1	●	●	●	●	●	●	●
4	구조장갑	1	●	●	●	●	●	●	●
5	개인랜턴	1	●	●	●	●	●	●	○
6	공기호흡기 (용기, 등자게, 면체, 보조스프 포함)	1	●	●	○	○	●	○	●
7	방화복	1	●	●	●	●	●	●	●
8	구조헬멧	1	●	●	●	○	●	○	○
9	다목적칼	1	○	○	○	○	○	○	○
10	안전안경	1	●	●	●	●	●	●	○
11	방화두건	1	●	●	●	●	●	●	●
12	관절보호대 세트	1	○	○	○	○	○	○	○
13	개인장비가방	1	○	○	○	○	○	○	○
14	도끼	1	●	●	○	○	●	○	○

1.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임
 2. 화재·구조 등 사고유형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개인이 휴대하는 장비를 조정할 수 있음
 3. 119안전센터에서 생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‘생활안전대’ 기준을 적용
- ※ 개인휴대 안전장비의 수량은 구조장비 보유기준 수량과는 다를 수 있음